
KB손해보험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세금 안내

(내국법인용·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포함)

※ 본 내용은 기존 KB금융지주의 주주님과는 무관하며 당사와 KB손해보험과의 주식교환을 통해 새로 KB금융지주의 주주가 되실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.

I. 포괄적 주식교환에 응하는 경우

1.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

- (1) KB손해보험 주식과 KB금융지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.
- (2)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. 양도가액은 수령하는 KB금융지주 주식의 1주당 주식교환일의 종가임.
- (3)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11% ~ 24.2% (지방소득세 포함)의 세율이 적용됨.
- (4)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시 본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.

2.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

- (1) KB손해보험 주식과 KB금융지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는 양도가액의 0.5%의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됨. 주당 양도가액이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의미함.
- (2)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탁한

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.

- (3)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7년 11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함.

II. 유의사항

1.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,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길 바람.
2. 주주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할 예정인바, 세무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031-682-1951(KB 손해보험 자문법인(어울림 세무회계))로 문의 바람.